



## King County

커뮤니티 복지부  
정신건강, 약물남용, 중독 치료 서비스 부서  
Department of Community and Human Services  
Mental Health, Chemical Abuse and Dependency Services Division  
Chinook Building, CNK-HS-0400  
401 Fifth Avenue, Suite 400  
Seattle, WA 98104  
206 263-9000 TTY/TDD: 206-205-0569  
[www.kingcounty.gov/healthServices/MHSA](http://www.kingcounty.gov/healthServices/MHSA)

다음 “프라이버시 보호관행 통지서(Notice of Privacy Practices)”에는 King 카운티 위기위탁 서비스(CCS: Crisis and Commitment Services)에서 귀하의 정신건강 기록을 사용하고 보호하는 지침을 설명하는 주요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HIPAA<sup>1</sup>라는 새로운 법률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것입니다.

- I. 프라이버시 보호 관행 통지서의 제 1 부에서는 건강 기록과 관련된 귀하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 II. 제 2 부에서는 귀하의 건강 기록을 보호하고 통지서 사본을 제공해야 할 King 카운티 위기위탁서비스(CCS)의 의무에 대해 명시합니다.
- III. 제 3 부에서는 치료와 그에 따른 치료비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위기위탁서비스(CCS)에서 귀하의 건강 기록을 사용하거나 공유할 경우의 지침을 설명합니다.
- IV. 제 4 부에서는 귀하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길 원하거나 프라이버시 보호 관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지서를 참조하십시오.

---

<sup>1</sup>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 King County

커뮤니티 복지부  
정신건강, 약물남용, 중독 치료 서비스 부서  
Department of Community and Human Services  
Mental Health, Chemical Abuse and Dependency Services Division  
Chinook Building, CNK-HS-0400  
401 Fifth Avenue, Suite 400  
Seattle, WA 98104  
206 263-9000 TTY/TDD: 206-205-0569  
[www.kingcounty.gov/healthServices/MHSA](http://www.kingcounty.gov/healthServices/MHSA)

### 프라이버시 보호 관행 통지서

King 카운티 정신건강, 약물남용, 중독 치료 서비스 부서  
위기위탁서비스(CCS)

유효일: 2003년 4월 14일

본 통지서에는 귀하의 의료 정보가 사용되고 공개되는 방법과 본인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의깊이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King 카운티 정신건강, 약물남용, 중독 치료 서비스 부서의 위기위탁 서비스(CCS)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시 여기며, 개인정보는 극히 신중을 요하는 정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귀하의 허락이나 법에 의한 권한 또는 법적인 요구 조건이 아닌 이상 귀하의 건강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 I. 귀하의 건강정보 권리

귀하의 건강 기록은 CCS에서 보관하며, 이 정보에 대해 귀하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치료나 치료비, 의료시술과 관련하여 저희 부서가 이용/공개하는 건강정보를 제한해줄 것을 요청할 권리.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저희 사무소 CCS 책임자에게 보내거나 송부해야 합니다. CCS 책임자가 제한요청서에 귀하의 서명을 요구할 것이며, 귀하는 서명한 다음 CCS 책임자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CCS는 귀하의 제한요청에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건강정보를 이용/공개하도록 이전에 허가했던 사항을 취소할 권리. 취소할 경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와 서면취소가 접수되기 이전에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귀하의 취소 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CCS** 로부터 보호 대상 의료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관행 통지서(이하 “통지서”)를 받아보실 권리.
- 본인의 건강 기록을 살펴보거나 사본을 복사하고 싶을 경우 요청할 권리. 서면으로 요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해당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거부될 경우에는 상소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소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치료나 치료비 기록 등 귀하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건강정보를 수정해줄것을 요청할 권리. 수정 요청서와 함께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여기는 이유를 **CCS** 책임자(주소: 401 Fifth Avenue, Suite 400, Seattle, WA 98104)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해당 요청을 뒷받침할만한 이유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의 수정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 **CCS** 에서 작성하지 않은 건강정보인 경우 (단, 해당 건강정보를 작성한 개인이나 기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수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 귀하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당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건강정보가 아닌 경우
  - 본인이 살펴보거나 사본을 입수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 건강정보일 경우
  - 정확하고 완전한 건강정보일 경우
- 귀하의 건강정보 수정 요청이 거부될 경우에는 귀하에게 거부 이유를 명시한 거부 통지서가 송부될 것이며, 귀하는 거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항의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항의서를 작성하길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향후 공개될 건강정보가 수정을 요청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요청 사항과 **CCS** 에서 거부한 내용을 첨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의서를 작성하기로 선택하신 경우, **CCS** 는 귀하의 항의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향후에 공개될 해당 건강정보에 수정 요청서와 거부 통지서 및 항의서와 반박 내용 모두를 첨부할 것입니다
- **2003** 년 **4** 월 **14** 일 이후로 공개된 귀하의 건강정보에 대한 기록을 요청할 권리. 기록이란 공개 목록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는 치료, 치료비, 의료기술의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와 같이 귀하의 건강정보에 대한 특정 공개 내용이나 귀하가 서면으로 허가한 공개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개 기록을 요청하려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저희 사무소 **CCS**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CCS** 책임자로부터 “기록 요청서” 양식을 얻어서 이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특정 장소 또는 특정 방법을 통해서만 연락을 취해줄 것을 요청할 권리. 이러한 비밀스런 연락 방법을 요청하려면 서명과 날짜를 기입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 부서의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시거나 이 양식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서신에 작성하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요청에 한해서는 모두 수용해드리길 원합니다. 요청 사유를 밝힐 필요는 없으며, 다만 연락 방법과 연락 장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II. CCS 의 의무

법률에서 정한 당 부서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에 명시한 경우 이외에는 귀하의 건강정보를 보관 유지해야 합니다.
- 귀하가 이 통지서를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 현재 유효한 프라이버시 보호 관행 통지서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보호 대상 의료정보와 관련하여 해당 관행을 변경할 권리는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지서 역시 갱신됩니다. 전화로 요청하거나 담당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통지서의 최신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인 [www.kingcounty.gov/healthServices/MHSA](http://www.kingcounty.gov/healthServices/MHSA) 에서도 이 통지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III. 귀하에 대한 의료정보 이용 및 공개 방법

다음의 항목들은 건강(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포함)정보를 이용 및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항목마다 의미 설명과 더불어 실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이용/공개는 실례를 나열한 것은 아니지만 당 부서에 허용된 정보 이용/공개의 모든 방법은 다음 항목들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치료, 치료비, 의료시술을 목적으로 한 정보 이용/공개의 실례

*치료의 경우:*

- 평가 중에 입수한 정보는 귀하에게 알맞은 치료 시설을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치료비의 경우:*

- 당 부서는 워싱턴 주 보건사회부(DSHS)에 치료비를 요청합니다. DSHS 에서는 치료비를 허가하기에 앞서 귀하에 대한 진단, 제공된 의료 서비스, 권장된 치료와 같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의료시술의 경우:*

- 저희 부서 직원은 정기적으로 기록을 검토하여 의료 수준을 평가하고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합니다.

기타 이용/공개

*가족 및 기타 사람에게 하는 통지*

- 치료를 위해 강제 구금되었을 경우 저희는 주법에 따라 귀하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해당 사실과 구금 장소를 통지하려고 성의를 다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 부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구조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귀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귀하의 보호 대상 의료정보를 이용/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개 한도까지

- 환자의 건강을 감독할 목적으로
-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공중보건 및 안전상의 목적으로
- 남용 또는 부주의 사례를 보고할 목적으로
- 사법/행정상의 절차에 따라서
-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한도에서 법률을 집행할 목적으로
- 환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환자의 건강 및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교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 특수한 정부 기능 및 산재보상의 목적으로
- 승인된 연구 활동의 목적으로
- 검시관, 법의관, 장의사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기타 이용

- 이 통지서에서 설명하지 않은 이용/공개에 있어서는 법적인 허용 규정이나 귀하의 서면 허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 IV. 도움 요청 및 이의제기

문의 사항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또는 귀하의 정보를 다루는 문제와 관련하여 알릴 내용이 있을 경우 위기위탁 서비스(CCS) 책임자(전화: 206-296-5296)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프라이버시 보호권이 침해되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위기위탁 서비스(CCS) 책임자, (전화: 206-263-9200 주소: 401 Fifth Avenue, Suite 400, Seattle, WA 98104)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CCS** 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CCS** 에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는 귀하의 권리를 존중하며, 귀하가 이러한 소송 절차를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 **CCS** 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www.kingcounty.gov/healthServices/MHSA](http://www.kingcounty.gov/healthServices/MHSA)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